

【부 령】

- 국토교통부령제29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기획재정부령제538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 기획재정부령제53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4
-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4

【고 시】

- 법무부고시제2016-99호(귀화허가)..... 65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9호(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 69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33호(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관련 업무위탁)..... 6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6호(신기술 지정) 6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호(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7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호(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전기·신호·통신설비 건설사업)..... 7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호(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82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4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82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87
- 국세청고시제2016-3호(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87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호(국적상실) 9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9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5호(하천점용 허가) 9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4호(지형도면<변경>) 93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7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94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항로표지 기능복구) 94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호(준공확인증명서 발급) 9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준공확인증명서 발급) 95
-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준공확인증명서 발급) 95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항로표지 신설)..... 96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동해항석탄이송교량등·교량표 신설)..... 96

(이면 계속)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6호(하천수사용 허가)	9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7호(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97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2호(하천수사용 허가)	98
○충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6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대상지).....	98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6-5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1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0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4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5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2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6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7호(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8호(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4
○국민안전처공고제2016-49호(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0호(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1호(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2호(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7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3호(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108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4호(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5호(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10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6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7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8호(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2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9호(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0호(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1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4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2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5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3호(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4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6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5호(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7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6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8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7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1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8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20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9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121
○교육부공고제2016-3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0호(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기관 지정 결과)	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9호(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2호(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3호(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2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6호(신기술지정 신청).....	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2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산림청공고제2016-3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2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3호(재결서 공시송달)	13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24호(결정서 공시송달)	13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1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1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공시송달).....	132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호(공시송달)	13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5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134
○경상북도고시제2016-50호(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5차>및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중정정).....	137
○서울특별시공고제2016-381호(토양정화업 등록취소).....	146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147
--------------------	-----

【상 훈】

○서훈(산업통상자원부·전라북도)	150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법원)	154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법검찰청원주지청)	154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법검찰청)	154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법검찰청경주지청)	155
○압수물환부공고(울산지방법검찰청)	155
○결정(서울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56

바. 법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보고자, 보고 내용,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함

- 1)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 2) 자율보고 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 3) 보고자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사.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주의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 1)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0조)
- 2) 주의경보 발령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주의경보 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아. 법 제17조에 따른 검증은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보고자 또는 환자안전지표 자료를 제출한 단체 및 기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1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신이앤씨, ② (주)부명건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634, ② 031-417-5882

2. 명칭 :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와 이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 대형 반전가대 설치나 대형 반전기 없이 현장에서 바로 조립이 가능한 반전장치를 사용해 도심의 좁은 작업공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하고, 튜브가 적재된 상태에서 반전되므로 시공환경 및 연장에 대응이 우수한 기술이다.(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

<범위>

소형화된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고 공기압 또는 수압에 의해 튜브를 기존관에 반전 밀착시킨 후 스팀열 또는 온수열에 의해 튜브를 경화시켜 보수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D200mm~D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2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